

第161回國會 政治關係法審議 特別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韓民國國會事務處

日 時 1993年5月20日(木)
場 所 政治關係法審議特別委員會(501號室)

議事日程

1. 公職者倫理法中改正法律案(李富榮·朴相千·李 協·姜秀淋·金元雄·朴啓東·元惠榮·李錫玄議員外 87人)
2. 公職者倫理法中改正法律案(申相式·金重緯·南在斗·金榮駟·白南治·崔在旭·河舜鳳·朴範珍·成武鏞議員外 158人)
3. 公職者倫理法改正에 관한請願

審査된案件

1. 公職者倫理法中改正法律案(李富榮·朴相千·李 協·姜秀淋·金元雄·朴啓東·元惠榮·李錫玄議員外 87人)..... 1面
2. 公職者倫理法中改正法律案(申相式·金重緯·南在斗·金榮駟·白南治·崔在旭·河舜鳳·朴範珍·成武鏞議員外 158人) 1面
3. 公職者倫理法改正案에 관한請願 4面

(11時18分 開議)

○委員長 申相式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2次 政治關係法審議特別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議事日程에 들어가기전에 지난 5月11日 第1次 當 特別委員會에서 구성한 바 있는 第1審議班과 第2審議班 委員님들께서 回附된 主要法案들을 그동안 심도있게 審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第1審議班 委員님들께서는 지난 1주일 동안 올바른 公職社會倫理觀確立을 위해서 不撤晝夜 公職者倫理法을 審議하여 當 特別委員會案으로 새로 만들어 오늘 全體會議에 報告하게 되었습니다.

1. 公職者倫理法中改正法律案
(李富榮·朴相千·李 協·姜秀淋·金元雄·朴啓東·元惠榮·李錫玄議員外 87人)
2. 公職者倫理法中改正法律案
(申相式·金重緯·南在斗·金榮駟·白南治·崔在旭·河舜鳳·朴範珍·成武鏞議員外 158人)

(11時19分)

○委員長 申相式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第2項 公職者倫理法中改正法律案 2件을 동시에 上程합니다.

朴相千委員 나오셔서 審議結果를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相千委員 第1審議班의 朴相千委員입니다. 公職者倫理法案 審議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法案은 名稱이 公職者倫理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公職者의 倫理自體를 規定한 法이 아니고 公職者의 倫理를 새롭게 확립하기 위한 制度的 法的 장치를 規定한 法案이라고 생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第1審議班은 지난 5月11日 第1次 政治關係法審議特別委員會의 議決에 따라 公職者倫理法을 審議하기 위해서 民主自由黨 金重緯委員 姜信玉委員 金榮駟委員 白南治委員 民主黨의 鄭均桓委員 洪思德委員 어느 交涉團體에도 屬하지 아니하는 金海碩委員과 本委員을 포함한 8人으로 구성되어 금년 5月 11일부터 5月20日까지 10회에 걸쳐서 民主自由黨과 民主黨에서 각각 提案한 公職者倫理法改正案을 진지하고도 성실하게 審議를 하였습니다.

當 審議班에서는 本法을 改正하는 취지를 公職社會에서의 不正한 財産增殖防止에 두고 政治圈과 公職社會에 새로운 倫理觀을 確立 함으로써 公務執行의 公正성을 確保하고 國民으로부터 信賴받는 公職社會를 이루기 위해서 公休일에도 쉬지 아니하였고 밤이 늦도록 審議를 繼續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法案에 이어서 選舉法과 政治資金法 政黨法 등 政治關係法을 改正하여서 韓國政治에 構造的 改革을 이룩할 것이며 이 法案은 政治改革法案 第1號라고 하겠습니까.

本 法案의 審議는 民主自由黨과 民主黨에서 提出한 改正案을 토대로 하였으며 本法에 改正에 관한 請願을 紹介하신 民主黨의 李 哲議員으로부터 請願에 대한 紹介意見을 듣고, 監查院, 內務部, 總務處 등 關聯部處 實務者의 意見을 聽取하여 改正案에 최대한 反映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第1 審議班에 회부된 公職者倫理法中改正法律案 2건은 財産公開制度의 도입을 핵심으로 해서 財産登錄 義務者 및 公開 對象者의 範圍, 登錄對象財産의 範圍, 公職選舉 候補者 또 主要公職內定者의 財産公開, 處罰 規定등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審議하였습니다.

특히 處罰規定에 관해서는 財産隱匿者에 대하여 刑事處罰을 할 것인가 아니면 公職者倫理委에서 自體制裁를 할 것인가를 두고 심도있게 검토하였습니다는 公職社會의 淨化못지 않게 중요한 公職社會의 안정을 위해서 自體制裁를 하는 方案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自體制裁가 형식에 호를 우려가 있기 때문에 公職者倫理委員會의 構成에 있어서 法官 등 外部人士를 과반수 이상 확보하고 公職者倫理委員會의 參考人 召喚權 虛偽報告나 虛偽資料를 提出한 者에 대한 處罰權을 보장해서 公職者倫理委員會의 權限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修正을 施行을 했습니다. 이렇게 實查權限이 대폭 강화된 公職者倫理委員會는 公職社會의 不正한 財産增殖을 막기 위해서 실질적인 措置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主要內容을 다시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財産登錄 義務者를 4級以上으로, 公

開對象을 1級이상 公務員 및 地方自治團體長과 地方議會 議員등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登錄對象 財産의 範圍에 非營利 法人에의 출연 財産과 外國에 있는 財産을 포함시켰고, 財産登錄 對象 親族의 範圍를 現行法과 같이 本人 配偶者 및 直系 尊卑屬을 포함시키되 直系 尊卑屬 중 피부양자가 아닌 者는 자기의 재산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拒否權을 주고 그대신 公職義務者는 財産登錄書類에 直系尊卑屬이 財産登錄을 拒否하는 사유를 明示하도록 함으로써 이 法案이 憲法裁判所에서 憲法訴願의 대상이 되는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습니다.

셋째, 憲法上的 獨立機關과 地方自治制의 실시에 따른 地方自治團體의 自律權을 보장하기 위해서 財産登錄機關과 公職者倫理委員會를 확대했습니다 다원화 했습니다.

넷째, 公職者倫理委員會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實質的 審査權을 부여했습니다.

다섯째,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는 이 法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財産公開制度를 과감하게 도입해서 大統領에서 부터 地方議會議員에 이르기 까지 모든 選舉職 公務員의 財産을 公開토록 했고 職業公務員에 대해서는 1級이상의 公務員에 한정하였으되 地方自治團體長을 포함시킴으로써 사실상 全國의 주요한 職業公務員의 財産을 公開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大統領에게 行政府 公務員 중에서 특별히 財産公開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財産公開를 확대할 수 있도록 裁量條項을 두었습니다.

여섯째, 각종 公職選舉 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 그 任命에 있어서 國會의 同意를 요하는 國務總理 大法院長 등 高位公職者 國會에서 선출하는 公職者에게 대해서도 그 任命前에 財産을 공개하도록 하여 취임한 이후에 不正한 財産增殖이 드러나서 公職을 辭退하고 補闕選舉가 실시되는 國力浪費를 미리 예방하였습니다.

일곱째, 이 法의 實效성을 確保하기 위하여 登錄財産 虛偽記載罪, 出席拒否罪, 虛偽資料 提出등의 罪, 職務上 秘密을 이용한 財物取得의罪등을 新設하여 財産登錄에 성실성을 보장하도록 罰則規定을 대폭 강화 하

였습니다.

여덟째 經過規定을 두어서 이 法이 大統領에 의해서 公布된 후 1個月 내에 施行되도록 하였고 地方自治團體에 대해서는 條例制定權을 감안해서 2個月 後에 施行되도록 했습니다.

施行日로부터 1個月內에 法的 財産登錄을 다시 하도록 하였으며 登錄後 1個月間 公職者倫理委員會의 補完措置를 거쳐서 法的 財産公開를 다시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公開後 3個月 동안 各級 公職者倫理委員會는 登錄財産 중에 公開對象者의 財産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심사를 완료해서 財産을 隱匿하거나 기타 虛偽登錄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 法에 規定한 過怠料 懲戒要求 解任要求 日刊新聞廣告欄을 통한 위반 사실의 對國民公表 이러한 制裁措置를 취하게 하였습니다.

改正案의 기타 主要骨子を 비롯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油印物을 참조해 주시고 本 審議班이 成案한대로 委員會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法의 施行이 政治圈과 公職社會의 구조적 개혁의 第1段階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申相式 잠시 幹事間의 意見調整을 위해서 停會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時31分 會議中止)

(11時51分 繼續開議)

○委員長 申相式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朴相千委員 審議結果 報告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報告를 들으신 公職者倫理法中改正法律案을 國會法 第51條의 規定에 의거 當 特別委員會의 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異議없으시지요?

○姜秀淋委員 議事進行發言이 있습니다.

○委員長 申相式 議事進行發言이 있으면 하세요.

○姜秀淋委員 우리 政治特委가 시작이 되어서 公職者倫理法을 상호간에 協商을 통해서 지금 改正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國會 또 앞으로 國會가 할

일이 改革입니다. 改革立法을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 本委員의 생각은 이 公職者倫理法 자체는 改革의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하나의 法律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政治特委에 계류되어 있는 다른 改革立法 여기에 대해서는 公職者倫理法에 파묻혀서 전혀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國會에서 다른 法도 改革을 해서 上程해서 통과해야 만이 마땅할 것입니다.

예컨대 選舉法 安企部法 國家保安法 政治資金法등에 관해서는 지금 어떤 特定法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저간의 與野의 院內總務간에 합의된 通信秘密保護法등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民自黨은 案 조차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改革을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本委員은 平정한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公職者倫理法을 통과하기 전에 분명히 우리는 이것을 밝히고 가야할 이 지금 政治特委에 계류되어 있는 改革立法 언제까지 시작해서 언제까지 마치겠다는 결의가 선행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된 다음에 公職者倫理法이 통과돼야겠다는 것이 本委員의 하나의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委員長님께서 答辯이 있어야지만이 제가 議決에 들어가하고자 합니다.

○白南治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申相式 白南治委員 말씀하세요.

○白南治委員 지금 民主黨의 姜秀淋委員께서 말씀을하셨는데 이 特委가 改革立法을 하기 위한 特委입니다.

그런데 改革立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倫理法을 통과시키기 위한 조건으로 지금 그런 提案을 한 것이냐 아니면 서로 열심히 하자고 하는 의미의 촉구를 하기 위한 것이냐 그것이 명확치가 않습니다.

그것 答辯 좀 해 주십시오.

○委員長 申相式 姜委員이 答辯 하세요.

○朴相千委員 우리 黨 所屬委員이기 때문에 제가 答辯 할게요.

與野 合意해 놓고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조건이 아니고 촉구하는 發言입니다.

○委員長 申相式 委員 여러분들, 議事進行發言에 대해서 한가지만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改革立法에 대한 審議日程에 대해서는 12月末까지 하도록 지난 2月 臨時國會에서 本會議 決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決議에 따라서 이 特別委員會가 구성되었고 두 個 審議班으로 만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委員會는 兩黨 幹事의 合意에 따라서 會議을 열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姜委員께서 그 추진에 대해서 더 소상히 알고 싶으면 貴黨의 幹事한테 소상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姜秀淋委員 제가 잠깐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黨의 幹事한테 아까 물어봤습니다. 또 여러 기회있을 때마다 물었습니다.

지금 우리 黨의 幹事께서 말씀이 언제 시작하고 언제쯤 된다는 것은 분명히 있어야겠다 그래서 이번 公職者倫理法 通過전에 委員長한테 분명히 얘기해서 그점은 우리 黨의 모든 委員들의 한결같은 견해였습니다. 그것을 지금 通過시키기 전에 우리가 분명히 얘기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 幹事 또 여기에 있는 모든 黨의 합치된 견해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幹事 말씀이 언제 시작하고 언제쯤 윤곽이 잡히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幹事가 그것을 물어보라 또 우리가 그것을 여기서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議事進行發言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申相式 알겠습니다.

오늘이 이 會議의 마지막 마무리에서도

제가 그 얘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姜委員의 여러가지 議事進行發言을 들은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으니깐……

그러면 일단 可決 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民主自由黨과 民主黨에서 提出되어 當 委員會에 回附된 두 件의 公職者倫理法中改正法律案에 대해서는 本會議에 附議하지 아니하고 廢棄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 없으면 可決 되었음을 宣布합니다.

3. 公職者倫理法改正案에 관한 請願

(11時58分)

○委員長 申相式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公職者倫理法改正案에 관한 請願을 上程합니다.

本請願에 대해서도 第1審議班에서 公職者倫理法中改正法律案을 審議하는 과정에서 紹介議員이신 李 哲議員으로부터 紹介意見を 듣고 請願 내용을 公職者倫理法 안에 반영 하였으므로 이 請願도 本會議에 附議하지 아니하기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可決 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추후 議事日程에 관해서는 幹事委員님들과 협의하여 通知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永權委員 議事進行發言입니다.

○委員長 申相式 李永權委員 말씀하십시오.

○李永權委員 아까 提案說明 과정에 16名으로 우리 特委委員이 구성 되었습니다. 그래서 内部的으로 보다 더 效率的인 運營을 위해서 1班 2班 이렇게 役割分擔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經過報告에 의하면 1班의 委員들만 舉名을 하고 기타 委員에 대해서는 舉名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 國會本會議 決議로 주어진 16名의 特委…… 그 趣旨에 조금은 벗어난 것이 아니냐 물론 그 동안에 1班 委員들이 고생을 많이 한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너무나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 분들 만의 함으로 오늘 全體會議에서 통과 하는 것은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政治關係法懸案이 하도 중요하고 숫자를 16名으로 各黨에서 책정했다고 하는 것은 효율성이 문제도 있지만 보다 더 심도있게 熟議를 해 달라고 하는 이런 주문이 내재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이번 경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個別的인 法案을 審議함에 있어서는 班끼리 충분히 거기서 토론을 하고 또 도중에 몇차례 정도는 全體會議을 열어서 일단 심도있게 논의를 하는 것이 法案을 審議하는 우리의 처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特委委員으로 결정된 委員 몇 사람만을 그렇게 거명할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같이 또 심도있게 논의하는 이러한 會議進行이 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會議進行을 보다 더 심도있게 논의를 하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全體會議을 열어서 熟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申相式 지금까지 그러한 國會慣例대로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各 常任委員會에서 小委員會를 구성하면 小委員들이 合意하거나 合意되지 않거나 그것을 全體會議에서 報告로써 접수를 하느냐 안하느냐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慣例대로 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李永權委員의 제의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는 幹事協議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永權委員 幹事協議를 하되 그런 뜻을 담아서 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委員長 申相式 그러면 오늘 會議를 모두 마치고 散會를 宣布합니다.

(12時2分 散會)

○出席委員

申 相 式	姜 三 載	姜 信 玉
金 榮 駟	金 榮 珍	金 重 緯
朴 憲 基	白 南 治	姜 秀 淋
朴 相 千	李 永 權	李 沅 衡
鄭 均 桓	金 海 碩	曹 駟 鉉

○出席專門委員

專 門 委 員 韓 世 東